

주주총회 안내문

주주각위

2020-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

주주 여러분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2020-1차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정상 참석을 못하시는 주주님께서는 동봉한 별첨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여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일시: 2020년 6월 29일(월요일) 오전 10시

장소: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(주)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

- 별첨: 1. 소집통지서
2. 참석장, 대리위임장
3. 위임장
4. 부의 안건에 관한 내용

2020년 6월 12일

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

2020-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, 2020-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0년 6월 29일(월) 오전 10시

2. 장 소 :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(주)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

3. 부의안건

제1호 안건: 정관 변경의 건

제2호 안건: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

제2-1호 안건: 사외이사 Stephen Choi 선임의 건

4. 지참서류

1) 참석증

2) 개인신분증

3) 개인인감도장(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)

4) 개인인감증명서 1부(최근 3개월 이내,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

5)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-주주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 및 참석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2020년 6월 12일

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
대표이사 하 태 석 [직인생략]

참 석 장

본인은 (주)이시스코스메틱 2020-1차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겠습니다.

일시: 2020년 6월 29일(월요일) 오전 10시

장소: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(주)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

2020년 월 일

회사명:

대표명: (인)

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중

대 리 위 임 장

본인은 _____ 을(를)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20년 6월 29일
개최되는 2020-1차 임시주주총회에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.

일시: 2020년 6월 29일(월요일) 오전 10시

장소: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(주)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

2020년 월 일

회사명:

대표명: (인)

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중

위 임 장

주주번호	
------	--

소유주식현황

소유주식수	
의결권있는 주식수	
위임할 주식수	

본인은 을 대리인으로 선임
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

2020년 6월 29일 개최되는 2020-1차
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
대리행사하는 권한

번호	주 주 총 회 목 적 사 항	찬성	반대
1	정관 변경의 건		
2	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		

※ 의안의 찬부표시는 해당란에 '○'표를 하여 주십시오.

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

- 주주총회시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목적사항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 목	지 시 내 용

2020년 6월 일

사업자등록번호/주민등록번호 :

회사명/주주성명 :

(인)

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중

[별첨] 부의안건에 관한 내용

제1호 안건: 정관 변경의 건 (세부내역)

정 관 변 경 (안)		비고
<p>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- 중략 -</p> <p>17.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18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9.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 또는 유가증권 투자</p>	<p>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- 중략 -</p> <p>17. 마스크 제조 및 판매, 서비스업 18. 치약 및 비누 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19.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20. 천연, 화학 생활 방역 소독약품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1.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22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3.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 또는 유가증권 투자</p>	<p>신규 사업 추가</p>
<p>제14조 (삭제)</p>	<p>제14조 (자기주식의 취득)</p> <p>① 본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1.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.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가.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나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</p>	<p>조문 추가</p>

	<p>㉔ 본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.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.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	
-	<p>제14조의 2(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)</p> <p>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.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	조문 추가
-	<p>제14조의 3(자기주식의 처분)</p> <p>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써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.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.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	조문 추가
<p>제17조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사채 발행금 증액

제18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제18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사채 발행금 증액
제19조(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제19조(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사채 발행금 증액
제20조(교환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제20조(교환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사채 발행금 증액
-	부 칙(2020.06.29) 제1조 (개정 및 시행일) 이 정관은 2020년 6월 29일 개정 및 시행한다	

제2호 안건: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

직책명	성명	출생년월	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
사외이사	Stephen Choi	1976.03	MACQUARIE UNIVERSITY, AUSTRALIA. (Master of Applied Finance) 2001.04 – 2007.05 TVG Capital, Vice President 2007.11 – 2010.01 Arctic Capital, Associate Director 2011.01 – Current CDIB Capital International (Hong Kong) Corporation Limited, Senior Vice President	이사회	없음	없음